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18 발의연월일: 2025. 2. 25.

발 의 자: 박해철·김문수·고민정

김 윤・박홍배・송옥주

송재봉 • 최민희 • 이광희

김승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로 하여금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외국 인근로자에게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을 제대로 가입해 주지 않음 에 따라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체불당하는 사 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의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호의2·제3호의2 신설 및 제30조).

법률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 니한 사용자

3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벌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29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2.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		
	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		
	하지 아니한 사용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4. • 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30조(벌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1.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	<u> 처한다.</u>		
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			
지 아니한 사용자			
2.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			
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			
<u>니한 자</u>			